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15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나경원
윤상현 · 김예지 · 김기현
이진숙 · 임이자 · 김용태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무차별 범죄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신질환, 개인적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형법」상 뇌물죄,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등에 대해 특정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해자와 연관성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4(불특정 대상에 대한 무차별 범죄의 가중처벌) 범죄행위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의 죄 및 제254조(제25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14(불특정 대상에 대한 무차별 범죄의 가중처벌) 범죄 행위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의 죄 및 제254조(제25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